

# **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 진흥조례**

## **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**

2020. 6. 17.  
행정건설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0. 5. 29. 이홍민 의원 외 7인
- 나. 회부일자: 2020. 5. 29.
- 다. 상정일자: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(2020.6.16.)  
상정, 심사, 의결

### 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이홍민 의원】

#### 가. 제안이유

문화예술축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축제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, 축제의 평가와 환류과정을 통해 경쟁력 있는 지역 문화예술축제의 육성 및 발전방안의 토대를 만들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1) 축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15조 ~ 제16조)
- 2) 축제심의위원회의 구성,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17조 ~ 안 제22조)
- 3) 축제의 평가 및 현장평가단 구성 등(안 제23조 ~ 제26조)

### 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최국모)

- 본 안건은 이홍민의원 외 7인이 발의하여 2020년 5월 29일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되었습니다.

- 동 조례는 「문화예술진흥법」 및 「지역문화진흥법」에 따라 마포구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 2015년 11월 19일 제정되었으며, 오늘 각종 문화예술축제의 발전방안을 담은 동 조례의 개정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이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.
- 동 조례 개정안 제4장에 축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신설하고, 이와 관련된 세부 규정을 제15조 ~ 제26조에 기술하고 있음.
- 안 제15조에서는 축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있고, 안 제16조에서는 이 조례에서의 축제의 범위를 정하여 위원회에서의 심의·평가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있음.
- 안 제17조 ~ 제22조에는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였고, 안 제23조 ~ 24조에는 동 개정 조례안의 핵심내용인 축제의 평가 및 환류와 현장평가단 운영에 대해 기술하고 있음.
- 안 제25조를 보면 축제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축제 총괄부서를 지정하고 그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.
- 종합 검토의견으로는 우선, 동 개정 조례안은 기존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서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는 마포구 문화예술 축제 프로그램의 개발·육성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신설하여 동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판단됨.
- 구체적으로 동 조례안의 개정 필요성을 살펴보면, 문화예술과에서 작성된 자료에 따라 우리 구 각종 축제의 개최 현황은 총 3개 부서에서 33개의 단체에 축제를 지원하고 있고 지원 예산은 286,500천 원에 달하고 있음. 또한, 위 3개 부서이외에도 관련 업무에 따라 축제가 개최되거나 민간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축제의 현황을 총괄할 부서가 지정되지 않아

우리 구 전체의 축제 운영 및 관리 문제가 대두되어 내용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축제가 연례적으로 지원될 소지가 있음.

- 위와 같은 이유로, 축제 총괄부서를 지정하여 축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, 각 시행 부서별로 개최되는 축제의 평가와 그 결과에 따른 환류기능이 있어야한다는 의견을 동 개정 조례안에 담보하기에 이르렀음.
- 따라서, 동 조례의 개정안은 법령상 시행에 문제가 없으며, 우리 구 문화예술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와 이를 바탕으로 한 축제의 평가 및 환류 과정을 통해 경쟁력 있는 지역 문화예술축제를 육성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
5. 토론요지: 없 음
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 음

8. 기타: 없 음